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06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누4928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5. 13. 선고 2015구합556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17.
판 결 선 고	2016. 12.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8. 원고에게 한 취득세 374,126,590원 및 농어촌특별세 34,077,890원(합계 408,204,4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06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16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23.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3. 7. 기각되었고, 2014. 6.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5. 기각되었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8행의 "315,484,093원"을 "215,484,093원"으로, 제4쪽 제9행의 "23,276,366원"을 "273,276,366원"으로 각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16행의 "끝."을 삭제하고, 제16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06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 나이트클럽 · 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끝.】

2.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당초 임차인이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부분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하였고, 원고는 이를 추인하거나 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고급오락장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1, 7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축물관리대장상 이 사건 건물부분 중 12층 294.92㎡ 및 13층 294.92㎡는 위락시설(유흥주점), 13층 32.32㎡는 미용원 용도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E은 2010. 7. 28. 이 사건 건물부분 전체를 영업소재지로 하여 유흥주점영업 중 룸살롱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였고 임차인이 2012. 2. 6. 이를 승계한 사실, 원고는 2013. 8. 29. 이 사건 건물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한 사실,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의 2013. 9. 30.자 및 2014. 2. 11.자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부분에는 주점 객실 30개(12층 19개, 13층 11개), 여성도우미 대기실(13층) 등이 있고, 12, 13층에 걸쳐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소로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시 이 사건 건물부분이 유흥주점임을 전제로 30일 이내에 호텔 객실로 용도 변경을 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06

부분에 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이 사건 건물부분이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으로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물부분의 현황은 객관적으로 관련 법령이 정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취득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30일 이내에 이 사건 건물부분을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이상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단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김복형

판사 남양우